◎ 국토교통부공고제2022-호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정밀도로지도 간행 및 수정간행 절차 간소화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(법률 제18936호, 2022년 12월 11일 시행)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위탁근거를 마련함

측량기계 성능검사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, 그 밖에 용어 정비 등 업무추진 상나타난 미비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밀도로지도 간행심사 위탁근거 마련(시행령 제104조)

나. 측량기계 성능검사 위반 시 측량기계 대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되 같은 위반사항으로 같은 날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차부과금액으로 제한(별표 13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 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- 전자우편 : wisdomlee@korea.kr

- 팩스: 044-201-5542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(전화 (044) 201 - 3481, 팩스 044-201-554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